

속초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의안
번호 218

제출년월일 : 1993. 12.

제출자 : 속초시장

1. 제안사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

2. 주요내용

— 별 첨 —

주요내용

□ 기능 (제2조)

○ 위원회 협의·조정사항

-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제도에 관한 사항
-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 요금 심의사항

-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교통요금,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 위원회의 구성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

□ 실무위원회 (제8조) : 위원장과 10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 경과조치 (부칙 제2조) : 속초시지방공공요금조정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교통요금
 5.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6. 주차요금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또는
임명한다.
-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물가담당계장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전 제출) 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전은 실무위
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 ② 간사는 제출된 안전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지방공공요금조정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전은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